



# 대학자체평가 규정

제정일	2009. 9. 1
개정일	2020. 3. 1
개정차수	4차
담당부서	기획예산과

## 제 1 장 총 칙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정의) 본교 자체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·평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 3조 (평가대상) 평가대상은 본교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.
- 제 4조 (평가기준) 자체평가의 평가영역, 평가지표 및 평가등급 등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 5조 (평가시기) 평가는 매 학년도마다 실시하며 평가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2 장 평가기구

- 제 6조 (총괄부서) ① 자체평가의 기획·운영·조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담당 하고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14.11. 1)
- 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1. 자체평가 업무 총괄
  2. 자체평가 역량 향상
  3. 자체평가 결과 공시 및 활용
  4. 자체평가 지표 개발 등
- 제 7조 (자체평가위원회)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 당연직 위원은 각 행정처·국장으로 하며, 본교 교직원 중에서 5명을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 (개정 2014. 1. 1, 2014.11. 1)
-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,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 (개정 2014.11. 1)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1. 자체평가 심사
  2. 자체평가 심사서 작성
  3. 평가위원회 운영 등
  4. 부서·학과 운영계획 및 결과 평가 (신설 2014. 1. 1)
  5. (삭제 2020. 3. 1)
  6.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(신설 2014. 1. 1)

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8조 (간사)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### 제 3 장 평가방법 및 절차

제 9조 (평가방법) ① 기획처에서는 자체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 (개정 2014.11. 1)

② 자체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계획을 전 부서 및 학부(과)에 사전 공지하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기획처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며, 위원회에서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. (개정 2014.11. 1)

제10조 (평가결과 보고)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1조 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 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발전 계획 수립,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적 향상 등에 활용 할 수 있다.

②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한 행정부서 및 학부(과)에 대하여 행·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2조 (수당지급)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